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42
----------	------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 의 자 : 강석진·함진규·주광덕
추경호·김선동·최연혜
유기준·김승희·이완영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수목장림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설치한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2) (생략)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5. (생략)

② ~ ⑤ (생략)

사. -----

1)·2) (현행과 같음)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